

영업의 폐쇄명령·정지처분의 세부기준(제1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,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, 영업폐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(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할 수 있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5년 이상 인삼류제조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법령	위반회수별 처분기준		
		1회	2회	3회
가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	법 제16조 제1항제1호	경고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
나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	법 제16조 제1항제2호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폐쇄
다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기준을 위반한 때	법 제16조 제1항제3호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폐쇄
라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	법 제16조	영업폐쇄		

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	제1항제4호		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	--	--	--